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및 제82조에 따라 불법하도급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가능하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최대 처벌 수위가 법 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법에서 정한 처벌 상한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현장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공정행위 입증에 기여한 공이 큰 최초 신고자인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대금 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습체불명단을 작성·공표 중이나 일부 세부절차에 대한 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하여, 이에 명단 공표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 지침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관리 필요

3. 주요내용

가.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수준을 법에서 정한 처벌 상한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강화(시행령 별표3의2, 별표6 개정)

나. 신고포상금 규모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공정행위 입증에 기여한 공이 큰 최초 신고자인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시행령 제34조의9 제1항 및 제2항 개정)

다. 상습채불건설사업자 공표에 관한 업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시행령 제82조의4 제3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6. ~ 2026. 1.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수준 강화 규제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을 “사실을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0만원 이내의 불공정행위”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 법 위반행위”으로 한다.

제82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별표 3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3의2 마목제2호1)부터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한 경우	1년	2년
2)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명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1년	2년
3)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8개월	1년4개월
4)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	1년	2년

자가 아닌 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5)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10개월	1년8개월

별표 3의2 마목제2호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8개월	1년4개월
--	-----	-------

별표 6 제2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8개월	30	24	16	8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6개월	24	18	12	6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10개월	27	27	27	27
나)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8개월	24	24	24	24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82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가)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나)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제2항제3호					
		1년	30	30	30	30
		1년	30	30	30	30
5)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82조	8개월	24	24	24	24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6)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나)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다)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제2항제3호					
	법 제82조	1년	30	30	30	30
	제2항제3호	10개월	27	27	27	27
		8개월	24	24	24	24
7)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82조	8개월	24	24	24	24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일부를 중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제2항제3호					

8)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24	24	24	24
9)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 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 사를 도급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6개월	24	18	12	6
10)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 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 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 다)	법 제82조 제2항제6호	8개월	30	24	16	8
11)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7호	4개월	16	12	8	4
12)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7호	8개월	30	24	16	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9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하
도급 참여제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		
(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		-----		
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		-----		
서 “불공정 행위”라 한다)에 관		-----		
한 <u>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u>		-- <u>사실을 신고한</u> -----		
<u>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u> 자로		-----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 -----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		
제외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u>200만</u>		② ----- <u>불공정</u>		
<u>원 이내에서 불공정행위의 중대</u>		<u>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 법</u>		
<u>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u>		<u>위반행위</u> -----		
<u>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①·② (생		명단 공표 방법 등)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③ <u>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u>		
		<u>교통부 장관이 정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연 락 처	(044) 201 - 3541